

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(등록취소)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

「평생교육법」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(무단폐쇄)하게 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(등록취소)에 따른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, 연락두절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2일

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

1. 공고명: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(등록취소)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

2. 근거법령

가. 「평생교육법」 제42조(행정처분)제1항제2호

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,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2.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나. 「평생교육법」 제43조(청문)

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2.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

다.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, 공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2.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(무단폐쇄)
4. 처분 내용: 등록 취소
5. 공고기간: 2026. 7. 22.(수) ~ 2026. 8. 5.(수)(15일간)
6. 처분의 대상

연번	시설명	설치자	시설 주소
1	리본필라테스안양 평촌점평생교육원	박호준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6, W에이스타워 316호, 317호, 318호

7. 청문 실시

- 가. 기관 및 부서명: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
- 나. 일시: 2026. 8. 10.(월) 11:00
- 다. 장소: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층 평생교육건강과
- 라. 청문주재자: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팀장 유도영

8. 의견제출

- 가. 기한: 2026. 8. 5.(수)까지
- 나. 의견제출처: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
- 다. 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, 2층 평생교육건강과
- 라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(031-386-6092), 전자우편(ykiki84@korea.kr)

9. 알리는 사항

- 가. 본 행정처분이 불복할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: www.simpan.go.kr)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(☎031-380-705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박호준(리본필라테스안양평촌점평생교육원)				
	주 소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6, W에이스타워 316호, 317호, 318호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(무단폐쇄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등록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· 「평생교육법」 제42조(행정처분)제1항제2호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,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2.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안양과천교육지원청	부서명	평생교육건강과	담당자	박유경
	주소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,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층 평생교육건강과			전화번호	031-380-7052
	일시	2026년 8월 10일(월) 11시			장소	2층 평생교육건강과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지방교육행정주사			
		성명	유도영			

※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「평생교육법」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거 등록취소됨을 알려드리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(☎ 031-380-705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청문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의 건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 박호준		전화번호
	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6, W에이스타워 316호, 317호, 318호		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등록취소		
	당사자	성명(명칭)	
		주소 (전화번호:)	
	의 건		
	기 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